



서울특별시 SH공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2016년 제5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

사규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사규 개정(안)에 대하여 「2016년 제5차 사규심의위원회」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
1. 일 시 : 2016.6.24(금) 9:30
2. 장 소 : 14층 기획상황실
3. 참석대상
 - 가. 심의위원(9명)
 - 위 원 장 : 기획경영본부장
 - 부위원장 : 경영지원처장
 - 위 원 : 주거복지부장, 재생기획부장, 보상총괄부장, 토목기술부장, 건축기술부장, 행정감사부장, 법무전문가

※ 위원 6명은 각 본부 주무부서의 장으로서, 참석불가할 경우 협의하여 본부 내 다른 부장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.

나. 입안부서 관계자(아래 입안부서 참조)

4. 심의안건

연번	대상사규	개정요지	입안부서
1	공무국외 여행규정	○공무국외여행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화 ○귀국보고서의 대외 공개를 위한 내부전산망 및 홈페이지 등록	인사 노무부
2	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취업규정	○태아검진시간 및 육아시간 신설 ○휴일, 병가, 대휴 등을 현행운영과 같이 개정	
3	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	○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관련조항을 개정 ○비위채용자의 응시자격 박탈 조항 신설	
4	연구업무규정 시행내규	○연구과제관리위원회의 운영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	도시 연구원
5	임대규정	○미임대상가 재공급시 광역센터장의 결정으로 공급	공공 임대부
6	임대규정 시행내규	○수동 동호배정 절차 현실화(관할주거복지센터의 결정) ○평형기준개선 : 영구임대주택 면적기준 개선, 동일부 요청시 ○입주자의 주거이동 ○계약서상 명도기간 연장(1개월→3개월)	
7	장기전세주택 운영내규	○계약서상 보수의 한계, 명도기간 변경(1개월→3개월)	
8	위임전결내규	○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에 따라 각 부서 의견 반영하여 신규 사무내용 전결권자를 신설하고, 기존 사무내용의 문구변경 및 전결권자 변경.	각본부 주무부서

※ 위임전결내규 심의방향 : 경영평가항목이 “조직혁신(조직개편, 권한위임 등)과 업무프로세스, 조직구조 등 개선”임을 감안하여, 권한위임의 하향에 중점을 두어 심의요청 예정

5. 의결방법 : 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(※입안부서의 장인 위원은 해당사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)

6. 심의위원 수당

가. 사규심의위원 수당 신설

1) 지급근거 : 사규관리규정 제13조제8항

사규관리규정 제13조 (사규심의위원회)

⑧사규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2) 수당신설사유

- 사규심의위원회는 심의부서 외의 부서장을 6명이상 위촉하여야 함.
- 각 부서의 현안업무의 시급성 및 사규 심의내용의 복잡함 등으로 인하여 각 부서장이 심의위원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나, 사규는 공사의 조직,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업무수행의 방침 및 절차의 중요한 근거규정이라는 점에서 제·개정시 심의가 중요하며, 사규심의 이전에 개정안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함.
- 위와 같이 사규심의의 중요성 및 전문화·고도화를 위하여 심의수당을 신설하고자 함.

3) 수당지급시기 : 제5차 사규심의위원회(2016.6.24.)부터 지급

나. 제5차 사규심의위원회 수당지급

- 1) 지급대상자 : 위원장, 부위원장, 법무지원실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수당지급
- 2) 소요예산 : 50,000원 X 6명 : 300,000원 (비용부서 : 예산자금부)
- 3) 예산과목 : 판관. 경비. 기타일반운영비

붙임 1. 심의안(2016-5차)

2. 사규심의위원명단(제2016-5차). 끝.

부 원 김채원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06/22

협조자 예산자금부장 **조한보**

시행 법무지원실-2152 (2016.06.22) 접수 ()
방참번호 본부장 방참 제272호
우 138-201 /
전화 3410-7128 전송 3410-7131 / cw0131@i-sh.co.kr / 공개